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옥성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구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.
- 구미시민(주민등록상)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우선 예약제를 통하여 산림휴양 기회 확대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을 참조하여 위약금 처리 기준 변경 및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산림문화휴양관 구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확대 및 사용시간 조정(안 제4조, 별표 1)
- 구미시민(주민등록상)에게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(20%)과 일부 시설(숲속의 집 5개동)에 대한 우선예약제 적용(안 제4조의2, 별표 1, 별표 1의2)

- 야영데크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징수방법 등 조정(안 제4조의2)
-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을 참조,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위약금 등의 처리기준 적용(안 별표 2 및 별표 3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 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본 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개선 및 구미시민에게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예약제를 적용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구미시민에게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우선예약제 실시

- 구미시민과 구미시승마장 월 회원에게
 - 성수기는 20%와 30%를, 비수기는 40%와 60%를 각각 감면
 - 예약 개시당일 08:30~09:00 전 예약실시

- 시설사용료의 납부방법을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개선 및
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기준을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실시

○ 위와 같이 시설이용 서비스의 충족과 시설운영의 극대화를
도모하고,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서,
자연휴양림의 관리개선과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타당한
것으로 사료됨.